



2026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03

##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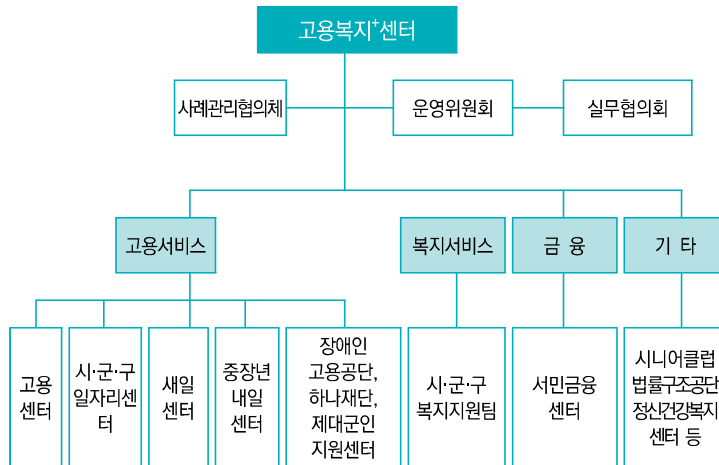


## 54 고용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

### □ 사업개요

- (목적)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업무 체계도)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 □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 분류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종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지역별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서비스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졸업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상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경력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제공
		하나재단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착 지원		
복지서비스	시·군·구 복지공무원	사회 복지 서비스 상담·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등 상담·제공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 영세 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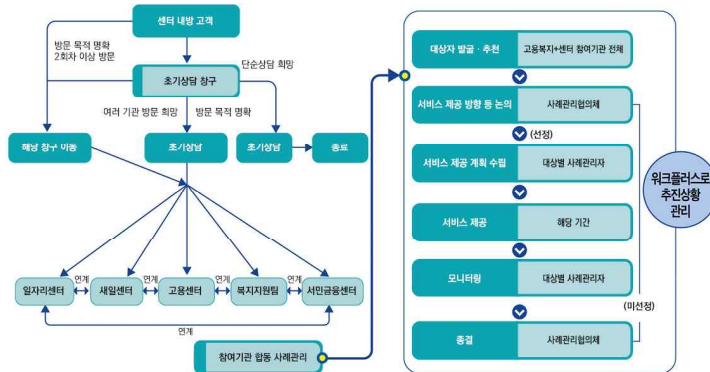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서비스 연계) 취업에 복합적인 애로가 있는 구직자는 적합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가진 구직자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추천·관리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서비스 연계 시스템\_워크플러스) 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 서비스 의뢰·연계·공유 등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 서비스 프로세스**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 운영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 (프로세스)



## 55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개요

-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구직자-일자리 1:1 매칭	구인 또는 구직신청을 받아 구인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일 경험이나 면접경험, 자신감 부족 등으로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채용대행서비스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 심사서류의 접수와 기초심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여 현장채용행사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집중 지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자는 구직신청서를, 구인기업은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구직자)이나 기업회원(기업)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또는 구인신청

## 56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개요

- 구직자의 경력개발단계, 구직애로유형 등에 따라 SI 기반으로 “진단-심층경력 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 서비스 내용

#### • (진행단계)



- ①잡케어(Job Care) 기반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②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③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 □ 지원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

지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청년구직자 자립을 위한 밀착상담과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탈수립 성공</li> <li>- (고용) 잡케어 활용 시장분석, 물류 무역사무원 훈련 지원, -(복지) LH청년 주택 보증금, 어린이재단 공부방 지원, -(금융)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유스), 청년기본두배통장 연계 지원</li> </ul>
------	---

## □ 신청 및 문의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02-2004-7861-4	부천	032-320-8916	포항	054-280-3016~7
서울강남	02-3468-4840	춘천	033-250-1912	안동	054-851-8056
서울동부	02-2142-8585	강릉	033-610-1936	영주	054-639-1148
서울서부	02-2077-6080	원주	033-769-0973	광주	062-609-8761
서울남부	02-2639-2457	태백	033-550-8651	광주광산	062-960-3247
서울북부	02-2171-1725	영월	033-371-6256/6268	전주	063-270-9252
서울관악	02-3282-9240	부산	051-860-2058	익산	063-840-6528
수원	031-231-7917	부산동부	051-760-7116	군산	063-450-0689
의정부	031-828-0930	부산북부	051-330-9816	목포	061-280-0522
고양	031-920-3914	창원	055-239-3514	순천	061-720-9199
성남	031-739-4949	울산	052-228-1972	대전	042-480-3993
이천	031-644-3806	김해	055-330-9527	청주	043-230-6705
안양	031-463-3808	진주	055-760-6707	천안	041-620-7401
안산	031-412-6922	통영	055-650-1815	아산	041-570-5567
시흥	031-496-1928	대구	053-667-6089	충주	043-850-4008
평택	031-646-1059	경산	053-667-6844	보령	041-930-6231
인천	032-460-4714	대구서부	053-605-6538	서산	041-661-5612
인천북부	032-540-5815	구미	054-440-3396		

## 57 기업지원종합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개요

-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 □ 서비스 내용

- (진단·컨설팅) 고용센터 담당자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컨설팅 실시
- (맞춤형 지원) 기업 상황에 맞춰 채용지원, 인사·노무관리, 인프라·환경개선, 맞춤형 인재 양성, 인지도 제고 등 지원
- (기초서비스 제공)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 안내, 애로사항 등 청취 → 장려금·노동·산업안전 서비스 수요 발생 시 담당자 연계 등 적시 지원
  - \* 노동부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협업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기업) 지역 우수기업,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예 시	 <b>A기업</b> 채용지원	설립 1년미만으로 인지도가 부족하여 청년 근로자 채용이 어려웠는데 학교와 연계한 채용서비스를 통해 청년 인재를 채용 할 수 있었어요.	 <b>C기업</b> 인사노무컨설팅	기업지원종합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임금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졌어요.
	 <b>B기업</b>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컨설팅해주어 직원의 업무역량이 향상되었어요.	 <b>D기업</b> 인프라 환경개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으로 근무환경이 좋아졌어요.

## □ 신청 및 문의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02-2004-7339	평택	031-646-1245	포항	054-280-3054
서울강남	02-3468-4815	춘천	033-250-1947, 1928, 1930	구미	054-440-3362
서울동부	02-2142-8454	강릉	033-610-1990 ~1994	영주	054-639-1132
서울서부	02-2077-3326	원주	033-769-0942, 0943	안동	054-851-8062
서울남부	02-2639-2413	태백	033-550-8661	광주	062-609-8622
서울북부	02-2171-1868	영월	033-371-6254	전주	063-270-9217
서울관악	02-3282-9214	부산	051-860-2054	익산	063-840-6507
인천	032-460-4675 ~4677	부산동부	051-760-7160	군산	063-450-0655
인천북부	032-540-5818, 5749	부산북부	051-330-9806	목포	061-280-0539
부천	032-310-8855, 8853	창원	055-239-0964	여수 (순천)	061-720-9150
수원	031-231-7843	울산	052-228-1972	대전	042-480-6020
의정부	031-828-0833, 0834	양산 (김해)	055-330-6437	청주	043-229-0719
고양	031-920-3981	진주	055-760-6756	천안	041-620-7497
성남	031-739-4907, 3151	통영	055-650-1855	충주	043-850-4037
안양	031-463-3891, 0745	대구	053-667-6038	보령	041-930-6259
안산	031-412-6644	대구서부	053-605-6461	서산	041-661-5614

## 58 심리안정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개요

- 구직·실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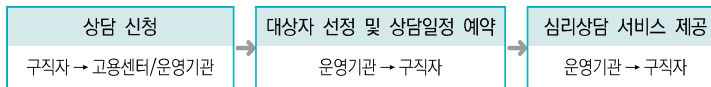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우 선 지 원 대 상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② 장기실직자 및 장기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 수준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분 ③ 대인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정상적인 취업촉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 ④ 사업 참여자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센터 사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장기 미취업(신청 또는 추천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취득) 청년 중 신속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	---

###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 지원절차



\* 심리안정지원원은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제공

## 59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개요

-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집단상담)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2~4일 간 집중 지원하는 실습·체험식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성취프로그램	성인 구직자	·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지원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H+] 고졸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고교 2~3학년	· 카드, 보드게임, 온라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경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활동 강화 · 경력·직장·취업역량·구진준비 이해, 채용서류·면접 준비 실전, 경력개발계획수립 등
[CAP@]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 직업선택부터 구직활동까지 종합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청년취업GYM]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모듈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 참여자 특성별 모듈(총 16개) 조합·운영 · 취업동기 부여, 정보탐색, 취업클리닉, 적응력 향상 등 종합 지원
취업희망 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 지원 · 일·직업가치·나의강점·채용트렌드 이해, 대인관계향상 지원, 희망실현 계획서 작성 등
[4U]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0대 구직자	· 진로전환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프로그램	50~60代	· 퇴직자, 이전직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 이해와 경력 전환기의 재취업 활동 지원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소그룹 취업컨설팅) 5~10명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직의욕 고취 또는 취업 역량 강화를 2~4일간 집중 컨설팅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청년취업 ON	취업희망 청년층	· 직무군별(경영사무/IT) 주요 역량 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지원
마음톡톡 심플	취업 취약계층	· 생애 진로 스토리 점검하기, 취업 방해 요인 탐색 등을 통해 구직의욕 향상 지원
조선업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조선업 취업 희망자	· 직업전환 고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식개선과 산업·직무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폭 확대
반도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반도체 취업 희망자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분야 진출을 돕고,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 (단기프로그램) 구직 스트레스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2~3시간 동안 집중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단 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각 3시간	· 구직 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 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 총 7종
취업특강 프로그램	각 2시간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수집 등 8종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별 운영일자와 고용센터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

## 60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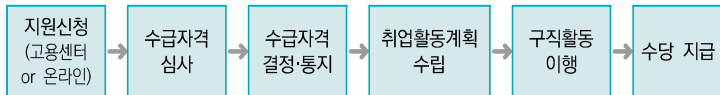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청년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중위소득 120% ↓	5억원 이하	
II 유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촉진수당】 월6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li> <li>•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li> </ul>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li> <li>•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li> <li>•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li> <li>•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훈련수당 (월 최대 20만원 ×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li> <li>- II유형 청년이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시 지급</li> </ul>

□ 사업추진체계





04

## 사업주 지원 장려금



## 6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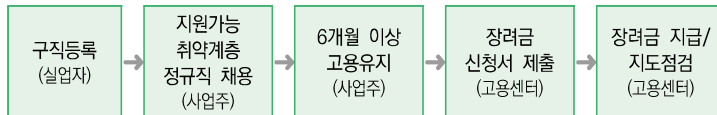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① 고용장려금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1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3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4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체계



## 62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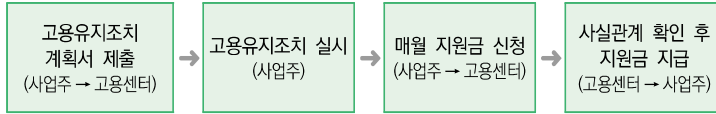
-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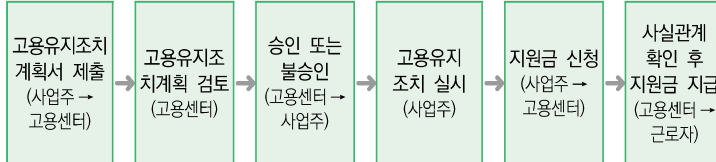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업·휴업(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 지원내용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휴직)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무급휴업·휴직) 연속 3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지원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승인금액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
  - (1일 상한액) 피보험자 1인당 68,100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사업추진체계

• 휴업·휴직



• 무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평균임금의 50% 미만 또는 미지급 등), 무급휴직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와 이전 1년간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이력 등을 토대로 사전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필요

### 63 고용안정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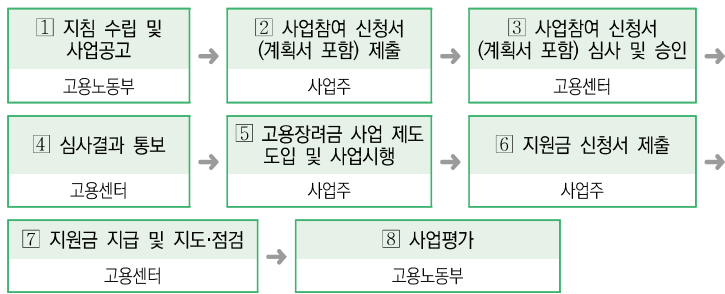
#### □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 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li> <li>※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li> <li>※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li> </ul>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위라벨+4,5 프로젝트)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감소한 20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 ①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③ 전자·기계적 방식 등을 통한 근태 관리 ④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li> <li>① (도입지원)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li> <li>*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li> <li>② (신규 채용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li> <li>▪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자</li> <li>▪ [지원인원 및 한도]</li> <li>① (도입지원) 20인 이상~50인 미만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100명까지 지원</li> <li>② (신규 채용지원) 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 시간)</li> </ul>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정규직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li> </ul>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금> ▶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 (그 외) 40만원 ▶ 최대 1년 범위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②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위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금] 육아기 시차출퇴근·재택원격 월 2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1년간 지원(육아기는 2배)</li> <li>[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 시스템 사용료 연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li> </ul>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금]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100만원 지원(첫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li> </u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금] 월 3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li> </ul>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파견 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14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동일)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지급</li> </ul>
	업무분담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금] 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합산 분담수당은 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 사업추진체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벨+4.5 프로젝트)의 경우, 노사발전재단이 ③~④ 역할을 수행

**6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임신, 육아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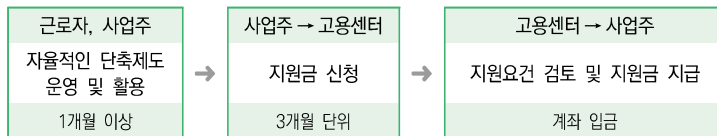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임신, 육아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⑤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육아기 10시 출근제>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③ 임금 삭감 금지 ④ 육아기(만 12세 또는 초6 이하) 근로자의 신청으로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매일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⑤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⑥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② 연장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li> <li>▪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li> </ul>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원·권으로 통(領)하는 고용노동정책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추진체계



**6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노동시간 단축 문화의 자발적 확산 장려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p>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감소한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p> <p>*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요건〉</p> <p>①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p> <p>②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p> <p>③ 전자·기계적 방식 등을 통한 근태관리</p> <p>④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단축시간) = (사업장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매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p> </div>	<p>■ [장려금]</p> <p>① (도입지원)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p> <p>*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p> <p>② (신규 채용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p> <p>■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자</p> <p>■ [지원인원 및 한도]</p> <p>① (도입지원) 20인 이상-50인 미만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100명까지 지원</p> <p>② (신규 채용지원) 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 시간)</p> <p>■ [신청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한)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필요</li> <li>-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li> <li>- (주기) 3개월 단위 신청</li> </ul>

한국로동(株)하는 고용노동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p]</li> <li>① 직무·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직군에 한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원</li> <li>②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에 명시된 모든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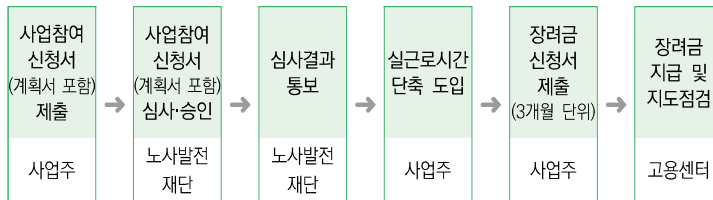
#### □ 지원 대상 사업주: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 ① (생명·안전 업종) 병원, 철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 22조의2 [별표1]에서 정한 업무
  - ② (장시간 노동 사업장) 직전 3개 연도 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
  - ③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 중인 사업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일반·무도유휴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종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사업추진체계



## 66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장려금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 ①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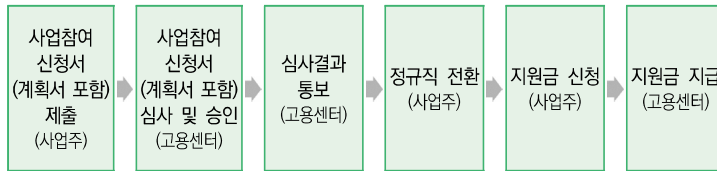
지원 제외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li> <li>-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li> <li>-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li> <li>-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li> <li>-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타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li> <li>-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li> <li>-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li> <li>-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li> </ul>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6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장려금 40)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4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장려금 30)
-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3인)를 한도로 함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사업추진체계



## 67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도입·활용하거나 일·생활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 □ 사업내용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활용)	24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20만원 (월 4일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 일부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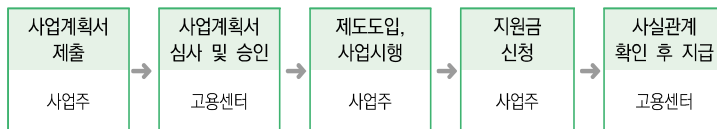
〈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출퇴근 및 인사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2년 최대 360만원)

□ 사업추진체계



[참고1]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관계 부처 노사단체 합동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노동부(총괄)·산업부·중기부·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공동 선정('24년-), 노사발전재단 위탁 수행

- (신청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 제도가 우수한 사업장
- (평가항목)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병행,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선정혜택)
  - ① (조사·감독 면제) 국세·관세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 ② (정부지원사업 우대)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우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시 우대,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③ (금융상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 ④ (기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고용24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테마관 운영, 우수기업 선정서·선정패 시상 및 마크 부여
- (선정절차) 사업공고·접수(3월) → 1차 심사(7월) → 현장실사 → 2차 심사(11월) → 우수기업 선정공고 및 시상(11월말)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온라인 신청
  -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참고2]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li> </ul>
독독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li> </ul>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li> </ul>

## 6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 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li> <li>※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li> <li>•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li> <li>*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100만원 지원(첫3개월)</li> <li>*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li> </u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li> <li>※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li> <li>•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li> <li>*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li> </ul>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li> <li>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파견사용</li> <li>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의 시작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한 기간</li> <li>•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원</li> </ul>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업무분담 지원금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피보험자수</th> <th>1개월 최대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td> <td>30인 미만</td> <td>140만원</td> </tr> <tr> <td></td> <td>30인 이상</td> <td>130만원</td> </tr> <tr> <td>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 <td>공통</td> <td>120만원</td> </tr> </tbody> </table> ※ 사업주가 대체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근로의 대가에 80% 한도로 지원 ※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 ②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매월 업무 분담수당 등 금전적 지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피보험자수</th> <th>1개월 최대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육아휴직</td> <td>30인 미만</td> <td>60만원</td> </tr> <tr> <td>30인 이상</td> <td>40만원</td> </tr> <tr> <td>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 <td>공통</td> <td>20만원</td> </tr> </tbody> </table>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합산 분담 수당은 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69 사회적기업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일자리창출, 판로, 경영 등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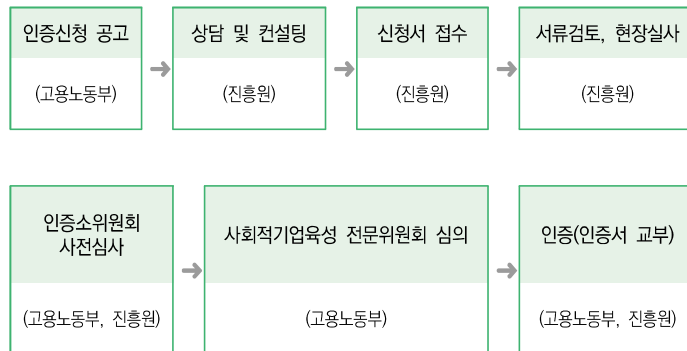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규정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지정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지정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 공고)	각 부처 (지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진흥원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광역자치단체 (심사 및 지정)	각 부처 (심사 및 지정)

•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인증준비를 지원</li> </ul>	-	-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li> <li>-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li> <li>*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li> </ul>	○	○
	유망기업 스탭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li> <li>* (디딤돌)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사업화·전문화 지원(R&amp;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li> </ul>	○	○
경영 지원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li> </ul>	○	○
	모태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li> </ul>	○	○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li> <li>-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li> </ul>	△ (미소 금융)	○
판로 지원	온·오프 라인 매장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및 'STORE36.5' 입점 지원, 홀소핑 연계 및 온라인물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지원</li> </ul>	○	○
	소셜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li> </ul>	○	○
	지역특화 스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을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li> </ul>	○	○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 ③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25년 857개소)	-	○	
생태계 지원	전략 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지자체 공모 사업)	○	○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까지 지원)	○	○
세제 지원	○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 지원내용(지원 기업수,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7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9),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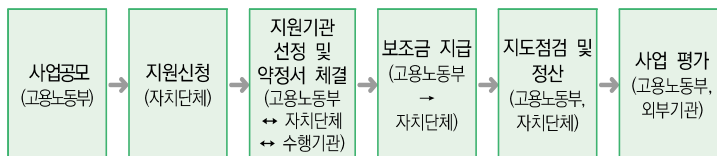
### □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

### □ 사업내용

- 일자리이음 프로젝트
  - 지역 내 거점 육성, 지역균형 발전, 초광역권 연계 등 자치단체 간 연계 일자리 사업모형을 발굴하고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일자리 단절을 예방(광역자치단체)
-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력산업 또는 업종 내 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패키지 지원(광역자치단체)

### □ 사업추진체계



## 71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26.2.5부터 적용)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현황('26.2.5. 현재): ▲야수·광주 광산구('25.8.28.~'26.2.27.), ▲서산·포항('25.11.21.~'26.5.20.), ▲울산 남구('26.1.12.~'26.7.11.) /고용위기지역 지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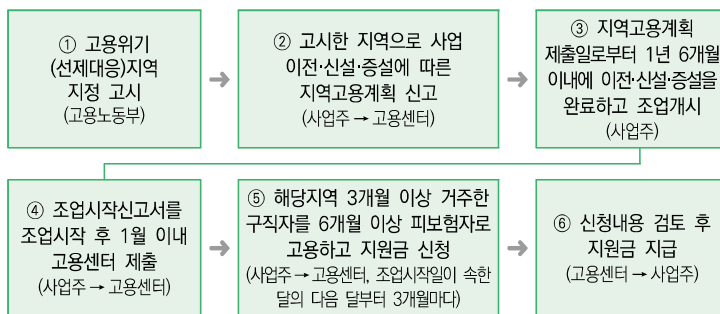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1일 상한액은 6.6만원)

### □ 추진체계



## 72 지역일자리 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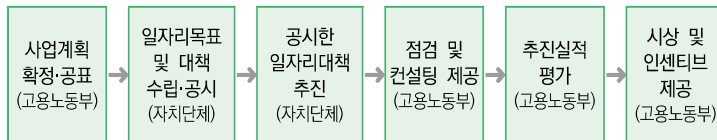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 사업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 □ 사업추진체계





## 74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목적

-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p>▶ 제1호~제4호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li> <li>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li> <li>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의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li> </ol>
2유형	<p>▶ 1유형의 제1호~제4호 중 1~2가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li> <li>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li> <li>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li> <li>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li> <li>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li> </ol>
3유형	<p>▶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p>

□ 지정절차

- 자치단체 신청 > 현지 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 75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p>▶ 제1호~제4호 중 3가지 이상 충족하는 업종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li> <li>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도산 및 불황·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 수</li> </ul> </li> <li>신청 직전 1년간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li> </ol>
2유형	<p>▶ 1유형의 제1호~제4호 중 1~2가지를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li> <li>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li> <li>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판매여건 등 산업여건</li> <li>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li> </ol>
3유형	<p>▶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어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지정절차

-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 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 76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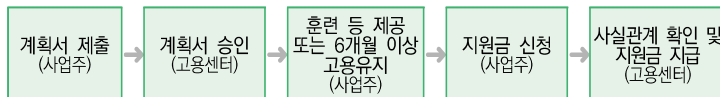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 최소화

### □ 사업 내용('26년 기준)

- 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 지원대상: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관련 사업주\*
    - \* 정부의 유관사업(사업재편, 사업전환, 산업·일자리전환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참여기업 또는 지원업종(자동차 및 부품업체,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해당 기업
  - 지원요건: ①[공통]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②[사업주 훈련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 실시
  - 지원내용: 직무심화·전환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 <사업주 훈련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정액)을 월 200만원(총 300만원) 내에서 지원
-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
  - 지원대상: 위기지역 소재 탄소중립 전환 관련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또는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근로자 채용 기업\*\*
    - \* 단,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규모 무관 / \*\* 단, 화력발전업 제외
  - 지원요건: 신규채용 또는 퇴직(예정)자 재고용하거나, 폐쇄(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이·전직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근로자를 신규 채용
  - 지원내용: 6개월 근속시 1인당 반기별 3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77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397),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www.kl.re.kr/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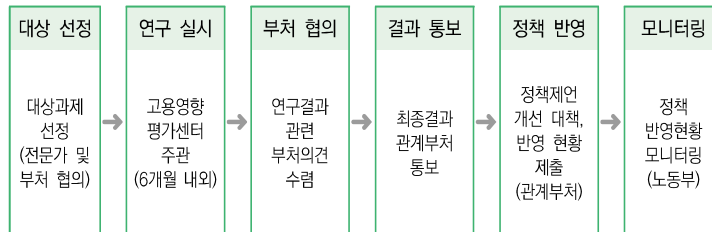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내용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제도·법령·사업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친화적 정책제언 실시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 사업추진체계



## 78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397),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work.go.kr/gongsi>)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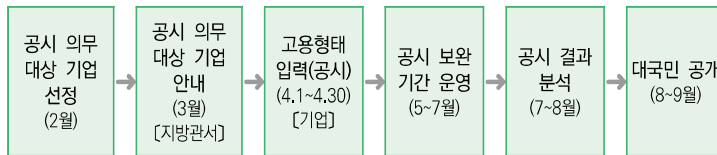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고용현황 공시

### □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등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공시기간**
  - 매년 4.1.~4.30.
    -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 **사업추진체계**



## 79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4),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s://laborstat.moel.go.kr)

### □ 목적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국민·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7조,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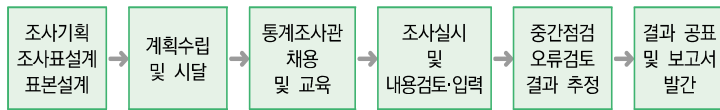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

조사명	조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항목
사업체노동력 조사	• (고용) 매월 마지막 영업일 • (근로실태) 매월 급여계산기간	•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50천개 사업체 • (근로실태) 상용 1인 이상 13천개 사업체	월 1회	• (고용)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 등 노동이동, 빈 일자리수 등 • (근로실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4월 급여계산기간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임금체계, 정년제, 유연근무제조사	6월 마지막영업일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기본급 체계(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 정년제, 유연근무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일, 10월 1일	종사자 1인 이상 72천개 사업체	연 2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채용계획인원 등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연 2회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 등 노동이동, 빈 일자리수 등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6월 급여 계산기간	근로자 1인 이상(특고 포함) 66천개 사업체	연 1회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임금, 근로시간, 보험 등)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12월	근로자 5인 이상 12천개 사업체	연 1회	기간제근로자 수 및 기간제법 적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회계연도	상용 10인 이상 3.6천개 기업체	연 1회	기업체의 직·간접 노동비용 • 직접: 임금(정액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 간접: 퇴직급여, 법정노동·법정외복지 비용 등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12.31.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①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②공무원 재직기관, ③사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가공·집계(사업체 및 종사자수)		

\* 이상의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가구조사 및 산하기관 조사 제외)

□ 사업추진체계



## 80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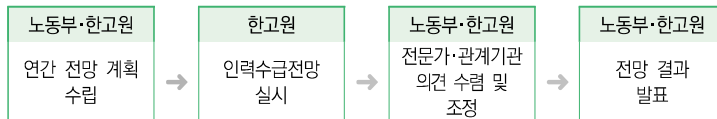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향후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 사업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실시
    - \* 10년 간의 성·연령·학력별 공급 전망 및 산업(소분류)·직업(세분류)별 수요 전망 실시
- 단기 고용 전망
  - (연간) 산업 대분류별 연간 고용 전망
  - (반기) 주요 10개 제조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 \*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AI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산업·직업별 테마 전망
  - 사회·경제적 이슈를 선정하여 인력수요 전망
    - \* '25년 전망 주제 : ① 자동차 산업 인력수요 분석 및 전망, ②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분석과 전망, ③특성별 이민자 노동시장 심층분석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 □ 사업추진체계





05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 81 고용보험제도

### □ 목적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 적용범위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다만,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등은 적용 제외
  - \* 적용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 직원, ▲ 비법인 상시 4명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예술인)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05.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동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사업체제

• 근로자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1.8	사업주 0.90 근로자 0.90
	- 유형: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재취업활동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1.6	사업주 0.80 종사자 0.80
	유형: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 고용보험 심사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심사처리절차



## 8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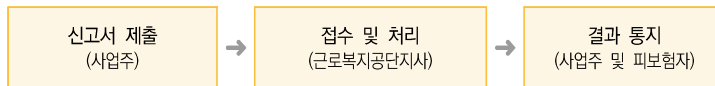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 □ 사업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예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예 '상실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예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자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3 구직급여·연장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8,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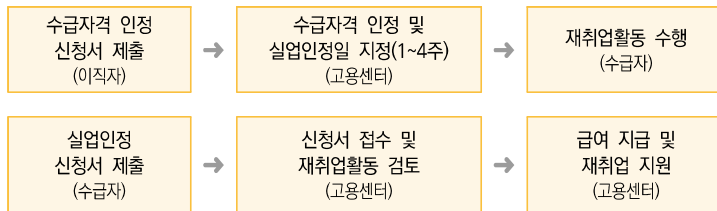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4 취업촉진수당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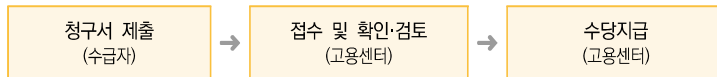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광역구직 활 동 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 주 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http://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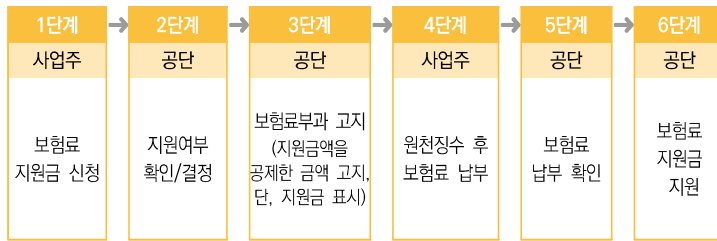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사업내용

- (지원기준) ①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①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87,400원 범위에서 지원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총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
    - \*\* 월 최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릭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 보험료지원절차



## 8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 □ 사업내용

-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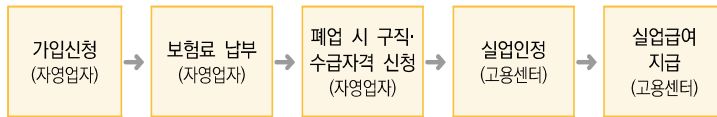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  
(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7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5%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고용센터	신청자	연금공단	연금공단	신청자	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보험료 정산

## 8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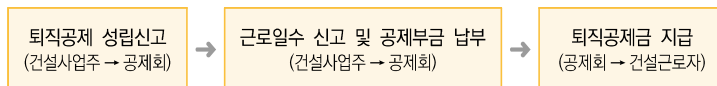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 사업내용

- 가입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 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EDI시스템(wedi.cw.or.kr)에서 신고·납부
  -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89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v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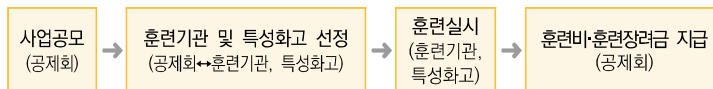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건설 직종 훈련을 통한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련 및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의 건설업 진입 촉진

### □ 사업내용

- (참여대상) 건설업 진입 희망자 및 재직자, 건설 특성화고 재학생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 및 특성화고에 훈련비 지원
  -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27천원/1일) 지원
    - \* 특성화고 훈련 제외
- (사업공모) 매년 1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훈련기관 및 특성화고, 훈련과정 선정
  - \* (훈련기관 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등
- (훈련과정) 훈련대상 및 숙련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팀·반장 등 현직 멘토를 활용한 현장실습 및 네트워크 지원
  - \* ① 실생활공간 구성과정(기초, 입문과정)
  - ② 전문 기능인력 양성과정(심화, 전문과정)
  - ③ 특성화고 연계 건설기능교육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9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가사랑'(www.gasarang.go.kr)

### □ 사업목적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 □ 사업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인증받은 기관은 ①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②요금 및 요금산정기준, ③이용 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근로계약 체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기본 근로조건 보장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근로 보장 (휴게시간) 당사자 간 협의, 이용계약에 포함 (유급휴일·휴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지원내용·수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노동부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보험료* (보험료 지원금 공제 금액) 부과 * 보험료의 20%	부과된 보험료 납부	보험료 지원금* 공단 지급 * 보험료의 80%	사업주 부과 보험료와 노동부 보험료 지원금의 납부 확인 (보험료 100%)

2026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06

자율 · 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91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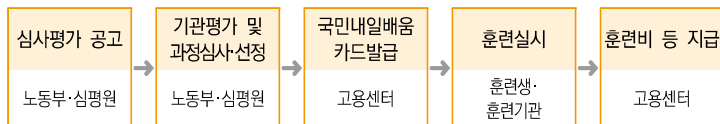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 사업추진체계



## 9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1회에 한함)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100%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뿌리 직종 등 일부 우대 직종에 대하여 특별훈련수당 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급

### □ 사업추진체계



## 93 돌봄서비스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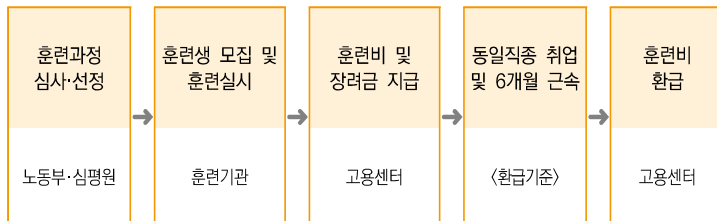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아이돌봄사)의 양성훈련 실시

### □ 사업내용

- (훈련과정) 의료기술지원(요양보호사), 아이돌봄(아이돌봄사)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훈련비의 90%\*를 훈련생이 선 부담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10%
  - 훈련 수료 후 동일 직종 분야로 취업하고 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 180일 이상 근속 시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사업추진체계



## 94 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훈련과정
  - \* 세부 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 17~19세,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확대('25년~)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

## 95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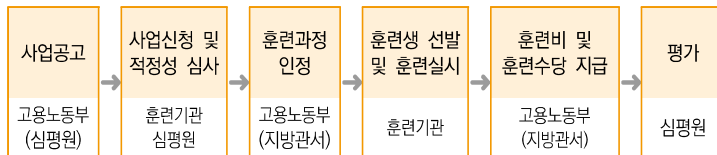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 사업내용

- (사업개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 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24년부터 디지털 분야를 넘어 첨단 및 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 분야를 확대·시행 중
- (훈련특징)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
  -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 경험·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 추구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훈련비(자부담 10%) 및 훈련장려금 등 추가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96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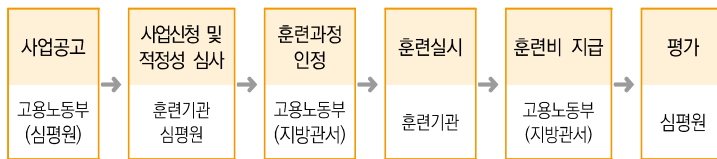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체계 마련

### □ 사업내용

-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 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 \* 실시간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원격 훈련이지만 집체 훈련에 준하는 과정 제공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의 크레딧 추가 지급
  - \* 추가 지급된 크레딧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훈련비 10% 자비부담)

### □ 사업추진체계



## 97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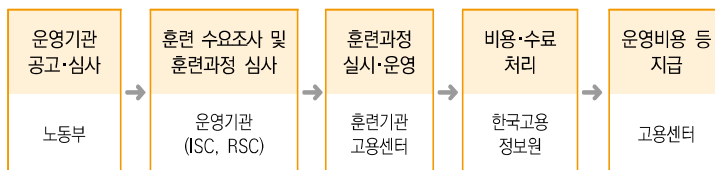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여 재직자의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 □ 사업내용

- (개요)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RSC) 등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 기반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훈련과정) 산업별·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직 및 이·전직 과정
- (훈련비) 최초 참여 시에는 계좌 잔액 범위 내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 2회차부터는 일반과정(140시간 이상)은 계좌 잔액 범위 내 훈련비의 45% 이상 지원, 단기과정(140시간 미만)은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98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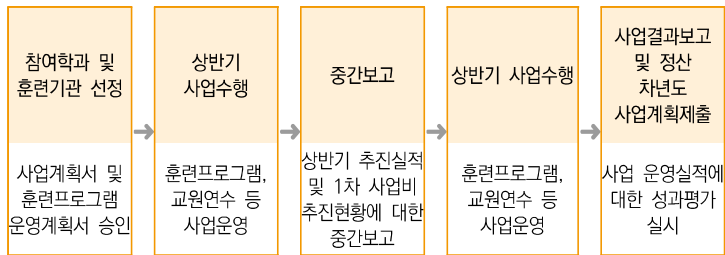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 (지원내용) 신기술·신산업분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 신입생을 재학 3년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간기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1~3학년)으로 지원
  - \* 학과당 8천만원 내외, 연차별 신규 학년이 추가되는 경우, 연계 훈련기관의 훈련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1개 학년 당 훈련비 5천만원, 운영비 400만원 추가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훈련프로그램(연 100시간 이상) 지원
    - 디지털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디지털 훈련과정 의무 이수
    - 교사의 신기술분야 전문성 및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등
- (훈련방식) 1~3년차 단계적 지원
  - (1년차) 신기술 기초지식 및 실습 위주 훈련(디지털기초훈련 의무 편성)
  - (2년차) 신기술 전문지식 훈련 및 관심 제고(특강, 멘토링, 경진대회 등)
  - (3년차)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산업계 수요 반영)

□ 사업추진절차



\* 전담 운영지원 기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및 학과 컨설팅 수시 진행

## 99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에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인프라 및 운영비 지원
  - 산업맞춤형 중 시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연 최대 5억 내외 지원(훈련비 별도)
  - 하이테크형의 경우 1년차 최대 8억, 2~5년차 최대 4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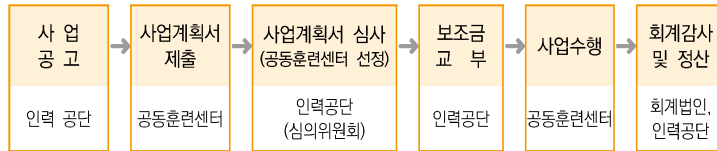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현금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에 지원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유형) 공동훈련센터 유형은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등으로 구분

유형	주요내용
산업맞춤형	·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가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기업(기업·사업주단체 등)의 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이테크형	·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사업 등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유·개방토록 운영비 등 지원

□ 사업추진체계



## 10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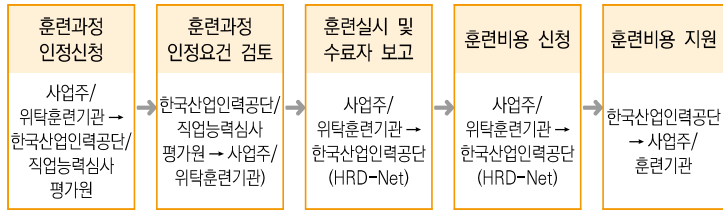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시간 이상 훈련(집체, 인터넷원격)</li> <li>-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li> <li>•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li> <li>• 1,000인 이상: 40%</li> <li>*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li> </ul>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li> <li>-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li> <li>-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 (대기업 100%)</li> </ul>
대체인력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인력인건비</li> <li>-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li> </ul>
훈련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li> </ul>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만원 한도)</li> </ul>

\* 중소기업 AI 기초(자부담면제)·융합(실비 최대 95%)훈련 지원('26. 308억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훈련과정 접수: ① 자체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위탁훈련 및 원격훈련-직업능력심사평가원

## 101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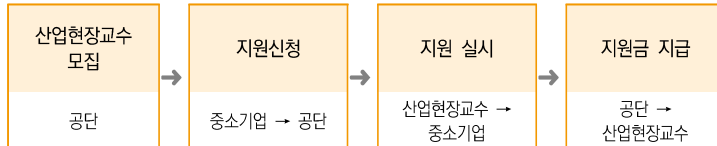
- 산업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 중소기업 대상 숙련기술전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품질관리 분야는 5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숙련기술전수 (애로기술 해결 등)

### □ 사업추진체계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102 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한국폴리텍대학(☎032-650-6780),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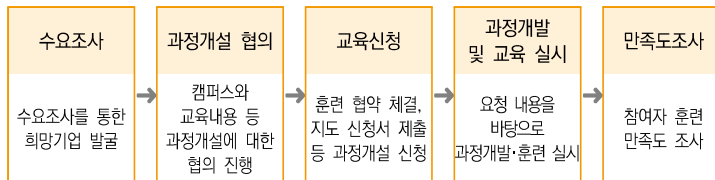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훈련기관이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 □ 사업내용

- 운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 훈련기간: 수시(1일 1회 4시간)
- 훈련형태: 이동현장훈련, 대학집체훈련 등
- 훈련장소: 기업 내 훈련시설, 임차 훈련시설 등
- 훈련인원: 6,500명('26년 기준)

### □ 사업추진체계



### 103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1644-8000), NCS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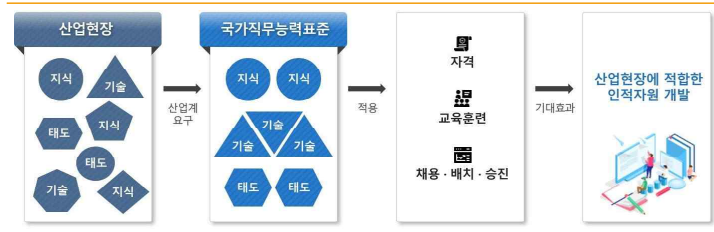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

#### □ 사업개요

- '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1096개 NCS(세분류), 13,296개 능력단위 개발·고시('25.12.16.)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학벌·스펙 위주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NCS 개발 추진

< NCS 개념도 >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바이오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예시

-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클라우드 보안 관리·운영’ NCS의 내용(예시)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 일부 내용만 발췌
클라우드 보안 관리·운영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준수	클라우드 관련 법률 검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 정책 분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li> <li>•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법규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li> </ul>
		클라우드 보안 인증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계약서(B2B, B2C)</li> </ul>
	클라우드 보안성 검토 수행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령, 규정, 정책 해석 능력</li> <li>•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 기술</li> </ul>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목표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li> <li>•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의지</li> </ul>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 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추진현황

-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매년 산업계 주도로 NCS 개발·개선 추진

\* ('25년)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미래유망 분야 포함 6개 개발,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57개 개선

### 104 산업별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1644-8000), NCS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 SQF(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는 산업분야에서 통용되는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능력중심사회와 직무중심 인사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

#### □ 사업목적

- 학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탈피, 교육훈련·자격·경력 등 다양한 개인의 역량이 산업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정기준 마련 필요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추진('13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산업별역량체계 구축 추진\*
  - \* 산업분야별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축된 SQF를 통해 KQF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 선택(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 2013)

#### □ 사업개념

- SQF(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는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도출하여 표준화하고<sup>(직무맵)</sup>,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구조화하여<sup>(직무역량체계)</sup>, 교육-훈련-자격-경력을 연계하여 활용하는<sup>(역량인정방안)</sup> 체계

사업 단계	산업별 직무분석 및 구조화		직무역량체계 활용							
	[1단계] 직무맵 구축	[2단계] 직무역량체계 개발	[3단계] 역량인정방안 마련 및 등록							
개념도	8				8					
	7				7					
	6				6				2대학 4정공역사 -	
	5				5				3대학 2연경, 2대학 2사시 -	
	4				4				4산업기사, 4국가공무원과공무	
	3				3				1진원대 4과, -	
	2				2					
	1				1					
	수준	직무	직무1	직무2	직무3	직무4	직무5	직무6	직무7	...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산업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은 고용노동부에서

□ 산업별역량체계(SQF) 구축 추진현황

- (직무역량체계 개발) 정보기술분야 SQF 구축 기초연구 및 시범 개발('13~ '15년)을 시작으로, '25년까지 ISC 주도로 47개 산업분야 개발

〈 연도별 직무역량체계 개발 현황 〉

연도	산업분야			
2015~2022 (16개)	소프트웨어	경영관리	직업상담서비스	전시·컨벤션
	카지노	용접	금형	표면처리
	바이오	정밀화학	석유화학	플라스틱·고무
	의약품	전기공사	의료기기	물
2023 (11개)	공급망관리	심리상담·지도	여행	숙박
	식품가공	선박생산	금속가공	세라믹
	전자기기	통신기술	자원순환	
2024 (10개)	가상융합	디자인	건축	기계생산
	전기설계·감리	에너지관리	반도체	방송
	자동차정비	산업안전관리		
2025 (10개)	로봇	마케팅·영업	음식서비스	철도전기
	기계연구설계	의류패션	전력기기	토양·지하수
	자동차부품생산	정보보호		

- (역량인정방안 마련) 개발된 26개 산업분야 직무역량체계의 수준별 직무역량과 교육, 자격, 훈련 등을 연계

〈 연도별 역량인정방안 마련 현황 〉

연도	산업분야			
2023 (5개)	소프트웨어	직업상담서비스	카지노	용접
	바이오			
2024 (13개)	공급망관리	심리상담·지도	여행	숙박
	식품가공	선박생산	금속가공	세라믹
	의약품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기술
	자원순환			
2025 (8개)	가상융합	디자인	건축	기계생산
	금형	정밀화학	반도체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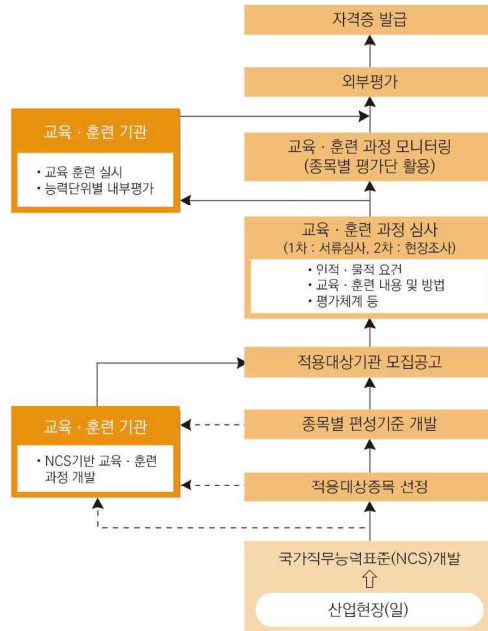
## 105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 □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 □ 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세 부 내 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		
②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 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③ 과정평가형자격지원 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인력공단
↓		
④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노동부
↓		
⑤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훈련기관
↓		
⑥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⑧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내부평가 60점이상	교육·훈련기관
↓		
⑨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106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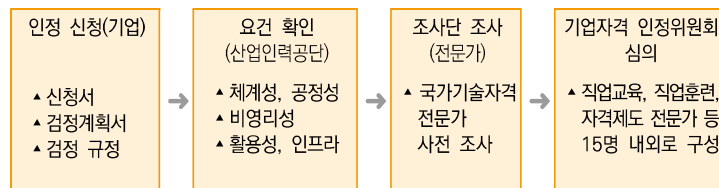
### □ 개념

-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 □ 정부인정 혜택

- (인정서 발급) 정부 인정서 발급, 정부인정 마크(BI) 사용 권한 부여
- (현판 증정) 기업자격 인정기업임을 인정하는 현판 증정
- (전산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 시스템에 정부 인정 기업자격으로 등재 관리
- (직무능력은행제) 인정 기업자격 취득자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대상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우수사례 포상) 참여기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확산

### □ 사업추진체계



## 107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관련 홈페이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 고용24(www.work24.go.kr)

### □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 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 심사평가 신청대상 구분

- 기관평가: 집체훈련기관\*, 원격훈련기관\*\*
  - \* 집체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25년부터 원격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의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는 별도 심사계획 공고
- 과정심사: 집체훈련과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은 별도 심사계획 공고

### □ 심사평가 요소

- 기관평가: 기관건전성(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및 훈련역량\*
  - \* 훈련성과(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고용유지기간 등), 현장평가(인프라, 과정 개발 등)
- 과정심사: 기본요건, 과정적정성(훈련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적정성\*\*
  - \* 실업자 일반계좌제훈련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심사평가 결과 및 활용

- 기관평가: 훈련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부여 및 고용24 (www.work24.go.kr) 공개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3년인증 외 2년 추가 부여
- 과정심사: 훈련과정 선정 제외(인증유예 등급 훈련기관 포함)

□ 추진일정

-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25.12월) → 훈련기관 설명회('26.4월) → 신청·접수(4월) → 기관평가, 과정심사(~9월) → 결과 통보(10월) → 이의신청 심의·확정(11월말)  
\* 수시심사: 계획 공고('25.12월) → 신청·접수('26.1월) → 심사평가(2~4월) → 결과 발표(4.30.)

## 108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 사업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 원격훈련의 경우 쌍방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함
-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중장년 내일센터 참여자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 사업추진체계



## 109 숙련기술 장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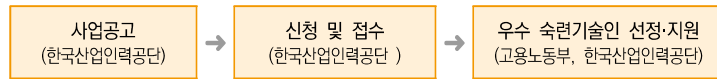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구 분	인원 (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대한민국 명장	2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려금 20백만원</li> <li>• 계속종사장려금 지급</li> <li>• 증서 및 명장패 등 수여</li> <li>•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1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li> </ul>
우수 숙련기술자	1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려금 2백만원</li> <li>• 증서 수여</li> <li>•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2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li> </ul>
숙련기술 전수자	1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기술전수지원금 지급</li> <li>• 증서, 휘장, 현판 수여</li> <li>• 기능대학 교원 자격 부여</li> </ul>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20개 업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 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판 수여</li> <li>•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li> </ul>
이달의 가능한국인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등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CEO로서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서, 휘장, 흉상패, 현판 등 수여</li> </ul>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구 분	인원 (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기특한명장	40명 내외	·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 입상, 국가기술 자격 취득 우수, 기술 분야 특허나 발명을 보유한 직업계고 학생이나,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 중 역량보유자 선정	· (기술회원) 증서 수여 · (학생회원) 증서 및 장문상 수여

□ 사업추진체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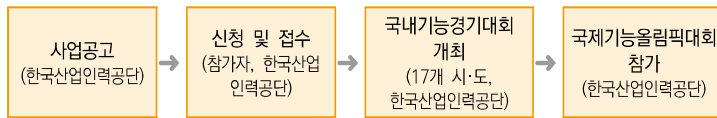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기능경기대회 저변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등을 통해 우수 숙련  
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 사업추진체계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출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 110 직무능력은행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https://bank.ncs.go.kr>)

## □ 사업목적

- 교육·훈련·자격·경력 등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내용

## 직무능력은행 구축 ('23.9월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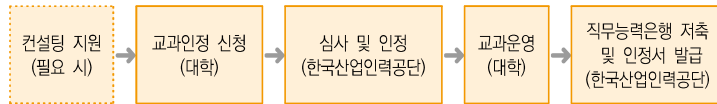
- 직업훈련(HRD-Net)·자격 정보시스템(Q-Net, CQ-Net), 폴리텍 통합학사 시스템 등을 연계한 직무능력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 '23.9.1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 (고도화) 고용보험DB,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등 연계('24.3월), 고교 NCS 기반 전문교과 이수내역(NEIS) 연계('24.6월), 기업 자격, 청년 해외 일경험·교육연수 등 연계('25.6월)
  - 고용24에서도 직무능력계좌 및 인정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계('24.12월)
  - 직무능력 서랍, 진단 및 커리어 코칭, 직업상담 지원가능 서비스 등 개시('25.12월)
  - 공인 민간자격, 일경험 정보 등 연계 확대 추진 예정('26년)
- 개인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발급, 저축된 개인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인정서' 발급
  - \* (개인)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
  - \* (기업)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여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 \* (고용서비스) 맞춤형 취업지원 및 훈련추천 등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 직무능력은행 연계 정보 현황 〉

구분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	연계 정보	연계 시기
자격	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형)	'23.9월
	수탁기관 내 정보시스템(8종)	8개 수탁기관		
	C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자격	
	국방인사정보체계	국방부	국방자격	'24.3월
-	사업주자격 운영기관	사업주자격(정부인정 기업자격)	'25.6월	
교육	-	교과인정 참여 대학	NCS기반 대학 교과인정 과목	'23.9월
	학사정보시스템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 교육정보	'24.3월
	평생학습계좌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24.6월
	NE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교생 NCS 기반 전문교과	'25.6월
	월드잡+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 교육연수 이력	'25.6월
훈련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정보	'23.9월
	학사정보시스템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 훈련정보	
경력	고용보험시스템	근로복지공단	상용·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이력	'24.3월
	국세정보시스템	국세청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국방인사정보체계	국방부	군 경력정보(군간부)	
	월드잡+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	'25.6월

NCS기반 대학 교과인정 및 컨설팅

- (교과인정) NCS 형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심사하여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과정으로 인정
- (컨설팅) NCS기반 교과인정과 직무능력은행제 참여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NCS 기반 교과 컨설팅 제공
- 추진체계



## 111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Q-Net 홈페이지(<https://www.q-net.or.kr>)

### □ 사업목적

-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구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직업능력 개발 참여와 자격취득을 활성화하여 청년 취업 경쟁력제고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

### □ 사업내용

- 34세 이하 청년\*이(소득 및 취업 여부 무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6년 기준 491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1인당 年 3회 지원, 단 예산 242억 원 소진시 마감)
  - \* '26년 기준 '91.1.1. 이후 출생자

### □ 지원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https://www.q-net.or.kr>) 원서접수 결제 단계에서,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0% 할인 자동 적용